

소방청 훈령 제15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도 운영지침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승진반영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근거법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등)과 적용대상(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방법 및 산출 기준

-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연간 교육훈련 시간을 정함.
- 2)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방법,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되

는 기간 등을 정함.

다.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교육·훈련·학습유형(내용)별 인정시간 기준(별표)을 정함.

라. 교육훈련 실적 관리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요령,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재개발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